동작구의회공고 제2020-48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,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사회재난피해자'를 '피해주민'으로 용어 변경(안 제3조~제8조)
- 나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신설(안 제4조)
- 다.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의2~제4조의3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0년 11월 13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

전문위원실(전화: 820-1323, FAX: 820-1474, E-mail: jurakim@dongjak.go.kr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"구 대책본부회의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피해"를 "피해"로, "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(이하 "재난피해자"라 한다)"를 "피해 주민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재난피해자"를 "피해주민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동작구"를 "서울특별시 동작구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재난피해자"를 "피해주민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"구 대책본부회의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"(지원기준)"을 "(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재난피해자"를 "피해주민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"을 "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"으로, "고시"를 "통보"로, "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"를 "결정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

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. 치료비 지원
-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장례비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- 2. 치료비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지원금액 등의 구상)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(이하 "원인제공자"라 한다)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.

제4조의3(구상에 대한 이의제기)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화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 중 "재난피해자"를 "피해주민"으로, "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"를 "원인제공자"로, "상당하는"을 "상당한"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(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)"를 "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등""을 "생활안정 지원, 간접지원 및 장례비·치료비 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 등""으로, "재난피해자"를 "피해주민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"을 "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부분 중 "재난피해자가"를 "피해주민이"로, "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"를 "사유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재난피해자가"를 "피해주민이"로, "재난피해자의"를 "피해주민의"로, "통장·이장·반장"을 "통·반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"을 "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"로, "생활안정지원등"을 "생활안정지원 등"으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"중소기업진흥공단"을 "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"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"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"를 "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을"로, "재난피해자 명의"를 "피해주민 명의"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"재난피해자"를 "피해주민"으로 한다.

제9조 중 "생활안정지원등"을 "생활안정지원 등"으로, "및"을 "또는"으로, "지원받은"을 "지원한"으로 한다.

제11조 중 "관하여 필요"를 "필요"로 한다.

별지서식 중 "피해신고서"를 "피해신고서(제6조제2항 관련)"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"타"를 "다른"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"「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"을 "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"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"동작구청장"을 각각 "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"으로, 같은 뒤쪽 중 "공공기관 및「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"를 "공공기관 및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"를 제7조"로 하고, 같은 뒤쪽 기호(*) 중 "않으면「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

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"를 "않으면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"로 하며, 같은 뒤쪽 중 "동작구"를 "서울특별시 동작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써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 결정) ① 서울특별시 동작	제3조(지원 결정) ①
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	
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	
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・	
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	<u>피해</u>
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	
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"구	
대책본부회의"라 한다)의 심의를 거	
<u>쳐 피해</u> 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<u>사회</u>	<u>피해주민</u>
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(이하	
"재난피해자"라 한다)의 생계 안정	
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.	
1.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	1
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	
자력(資力)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	
<u>재난피해자</u> 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	- <u>피해주민</u>
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	
2.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	2
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	
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	
위한 <u>동작구</u> (이하 "구"라 한다) 차	<u>서울특별시 동작구</u>
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	
3.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	3

입은 시설의 복구와 <u>재난피해자</u>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u><신</u>설>

② (생략)

제4조(지원기준) ① 구청장은 관계 법 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<u>재난피해자</u>의 생계 안정을 위 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4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, 피해상황,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<신 설>

<u> </u>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은 법 제1
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
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"구 대
책본부회의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
구청장이 정한다.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4조 <u>(지원)</u> ①
<u>피해주민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
<u> 지원</u>
<u>5</u> 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
<u>원</u>
<u>통보</u>
결정한다.
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
각 호와 같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<u>재난피해자</u>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 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 거나, <u>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</u> <u>원인자</u>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

- 1. 장례비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- 2. 치료비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기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- 제4조의2(지원금액 등의 구상)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(이하 "원인제공자"라 한다)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.
- 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 하여 구청장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 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(중복지	원 금지)	<u>피해주민</u> -	
<u>원인제</u>	<u> 공자</u>		

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 금 등에 <u>상당하는</u>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제6조(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)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등"이라 한다)은 해당 <u>재난</u> <u>피해자</u>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.
 - ② <u>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</u> <u>피해자는</u>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 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재난피해자</u> 가 다음 각 호의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 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· 2. (생략)
 - ④ (생략)
 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<u>재</u> <u>난피해자가</u> 사망・실종・부상・고 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

<u>상당한</u>
제6조 <u>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</u> ① <u>생</u>
<u>활안정지원, 간접지원 및 장례비·</u>
치료비 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
<u>등"</u> <u>피해주민으</u> -
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
<u>해주민은</u>
·.
③ <u>피해주민이</u> -
<u>사유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⑤
<u> 피해주민이</u>
<u>피해주민의</u>

당 거주지의 <u>통장·이장·반장</u> 등에 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)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 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
- 3. ~ 8. (생략)

제8조(지급방법) 구청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<u>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</u>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<u>재난피해</u>자 명의의 금융회사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

<u>통·반장</u>
 ⑥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
 제7조(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)
1. (현행과 같음)
2
<u>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</u> 3. ~ 8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지급방법)
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
<u> 원 등을</u> <u>피해주</u>
민 명의

다)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. 다만, 신용불량 등의 사 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- 피해주민-----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 제9조(환수)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제9조(환수) ------ <u>생활안정지원 등</u>-----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 ---- 또는 ----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----- 지원한 -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 제11조(그 밖의 주요 사항) 이 조례에 제11조(그 밖의 주요 사항) -----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 한 구호,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,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----- 필요-----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조 관련)

[별지 서식]사회재난 피해신고서(제6

[별지 서식]사회재난 피해신고서